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수출기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과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법률 개정(법률 제18884호, '22.6.10. 개정, 9.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5조의3)

- 최근 법률 개정('22.6.10.)으로 위임 조항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나.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5호)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및 수출기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6호)

- 한국임업진흥원 사업 범위에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관리 및 업계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수입 목재류의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16.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15.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u>
<u><신설></u>	<u>16.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u>
<u>15.</u> (생략)	<u>17.</u> (현행 제15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임업통상팀	
연 락 처	(042) 481 - 4085